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,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

고용노동부

대구지방고용노동청

수신 이준혁 귀하

(경유)

제목 행정처분(자격취소) 알림

1. 귀하는 2012.12.24.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으나,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34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2023.2.3. 청문 실시(불출석 및 의견 미제출) 후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알려 드립니다.

성명 (주민등록번호)	자격직종 (고유번호)	처분근거	결격사유	처분내용
이준혁 (760927-1*****)	사무자동화 3급 (3급 1773호)	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호	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	자격 취소

2.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끝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

주무관 곽수현 팀장 조재현 과장 전결 2023. 2. 7.
구영본

협조자

시행 직업능력개발과-1782 접수

우 420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2 (범어동 45-31 대구고용센터)/ http://www.moel.go.kr/daegu
6층 직업능력개발과

전화번호 053-667-6773 팩스번호 053-720-4018 / shkwak1990@korea.kr / 비공개(6)